

2022학년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계획(안)

I 근거 및 목적

-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「별표1 및 부칙 제2조」 (무시험검정 합격기준)
 - ※ **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**
 -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**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**
- 서울대학교 규칙 제2140호 『서울대학교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②항』
 - **제13조(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)** ①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(이하 “심폐소생술 교육” 이라 한다)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교원양성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한심폐소생술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.
- 최근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며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함

II 실습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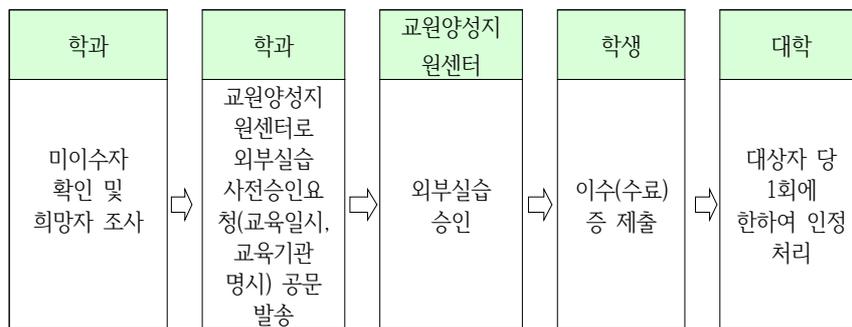
- 실시 대상
 - 서울대학교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사범대학대학원 - 교직이수자) 재적생 전원
- 교육내용
 - * 성인/소아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
 - * 응급처치 : 화상, 이물질 흡입 등

○ 교육방법

- * 교육생 6명당 강사 1인이 교육 및 지도
- * 이론 강의(1시간) : 이론 강의 및 동영상 시청 등
- * 실습(1시간) : 동영상 보면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술기 익히기
- * 평가(1시간) : 심폐소생술,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술기 평가

○ 교육주관 :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 - 교원양성위원회 심의사항 (2016.02.16.)

○ 외부기관 실습 및 수료 인정 처리 절차 (인정 외부기관 : 대한심폐소생협회)



○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기관을 이용하여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육 이수해야 함

○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Ⅲ 신청 방법 및 일정

○ 실습일정 : (학사일정 외래강사 일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)

- * 월/수/금 15:00~18:00, 마지막 주 화/목 15:00~18:00
- * 교육시간 : 3시간(15시-18시)
- * 교육정원 : 12명 (6명 미만 시 폐강)
- * 교육장소 : 체육관 71동 212호(1층 농구코트 원편 계단 이용)

○ 9월 교육신청은 8월 30일(화) 10:00 일괄 오픈합니다.

10월 교육신청부터는 기존 방식대로 교육일 기준 30일 전 교육 예약이 자동 오픈됩니다. (<https://cpr.snu.ac.kr/> 공지사항 [필독] 교육신청 가능시간 안내 참조)

- ▶ 교육예약하기 : 심폐소생술 교육실 (<https://cpr.snu.ac.kr/>)

코로나 관련 안내사항

심폐소생술 교육이 장시간 대면 실습으로 땀을 흘리거나 가쁜 호흡으로 인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발열, 호흡기증상 등의 유증상자는 교육 참여가 불가합니다.

- 직접실습이 어려운 장애학우의 경우 학과에서 파악하여 공문으로 실습대체 교육 요청

IV 기타사항

-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으로 실시
- 서울대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 수수료 후 일괄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과정으로 등록됨(교육 담당자가 일괄 단체 등록)
- 교육 후 실기평가를 통과한 교육생에게 교내 수수료증(대한심폐소생협회 이수증-개별 신청)이 발급됨

V 유의사항

- 실습을 미 실시하게 되면 교원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, 사범대학 학부생의 경우 졸업도 불가함
- 실습 지원자는 실습 장소에 시간을 엄수하여 입실 완료하여야 함
(교육 당일, 과정시작 20분 전부터 출석 서명을 시작)
- 교육 당일 매트위에서 실습이 진행되므로 편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참석
(치마, 짧은 바지, 많이 파인 옷 등은 삼가)
- 교육 당일 별도의 지참물은 없음
- 실습 횟수의 **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**으로 함(연속학기 불가)
부득이하게 연속학기 교육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 공문으로 신청

- 일반대학 교직과정 학생의 경우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이후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함

VI 행정사항

-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: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(<http://cpr.snu.ac.kr/>)
- 관련 기타사항 문의처 :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 02-880-4246